

2026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계획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등에 따라
“2026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22.

보건복지부장관

2025년도 말에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하되, 해당 기관의 교육 활동은 2026년도부터 실시

1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개요

1 지정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인식개선교육 위탁 등)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제16조의2~4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 제2조의5(인식개선교육기관의 전문강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를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기관(이하“인식개선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지정 목적

- 충실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수행될 수 있도록, 교육을 체계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함.

*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이란?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 운영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인력·교재 등의 전문성 및 적정성,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함.

③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이하, “인식개선교육기관”) 주요 역할

- 의무교육 대상기관* 모집
- 장애인식개선교육 세부계획 수립
-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안 또는 콘텐츠 개발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및 관련 자료 보관
- 인식개선교육기관별 소속 강사 역량강화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 모니터링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보고 등

* 의무교육 대상기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 각 급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④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계획 공고, 지정 및 취소, 지정서 발급 등
-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정 신청 접수 및 확인, 인식개선교육기관 운영 관리 등
- (인식개선교육기관) 효과적인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및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 전문강사 보유 등
- (의무교육 대상기관) 인식개선교육기관 교육 의뢰 및 수행, 교육 결과 보고 등

⑤ 추진일정(안)



※ 단,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2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

① 신청 자격(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로 전문강사 1명 이상을 보유한 인식개선교육 역량을 갖춘 곳)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정관이나 규약 등에 인식개선교육의 실시를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인·비영리민간단체
-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의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

②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모집 지역: 전국 전 지역
- 선정 개소: ○○개소
 - 서류 및 면접심사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인 기관에 한하여 선정함.
- 제출 기간: 2025. 10. 22.(수) ~ 11. 10.(월) 18:00까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 제출 방법: 교육강사·기관전용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교육강사기관 전용시스템(www.able-edu.or.kr/expert) 회원가입 후 지원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제출 서류(아래 제출 서류 목록 참고)

-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교육 운영계획서, 전문강사* 보유 현황, 대표교안,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출 서류 목록을 필히 확인하시어, 누락 없이 제출 바람.

*** 전문강사 및 보유 현황 증명서류**

- 전문강사: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수료·평가를 거쳐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위촉한 강사(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2호)
- 증빙서류(필수제출)
 - ①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위촉장 또는 위촉평가 결과 안내 공문(한국장애인개발원 발급)
 - ② 재직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계약서 등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서류 목록	비고
①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 공문	자유 양식
②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법정 양식)	붙임 1
③ 신청 자격 증명서류	해당 시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시설 정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법인 정관 등	장애인복지단체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법인 정관 등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단체 정관(또는 규약) 등	비영리민간단체
• 기타 신청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외 자격
④ 사업자등록증(업종/업태: 교육) 또는 고유번호증	공통제출
⑤ 교육 운영계획서(공통 양식)	붙임 2
⑥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수행 실적(엑셀 공통 양식)	붙임 3
⑦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 및 소속강사 보유현황(엑셀 공통 양식)	붙임 4
⑧ 서약서(공통 양식)	붙임 5
⑨ 개인(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 6
⑩ 대표교안(PPT, 슬라이드 노트 내 스크립트 대본 작성 필수)	자유 양식
⑪ 기관 소개 자료(PPT) - 해당 자료는 3단계 면접 심사에 활용하며, 향후 변경 불가	자유 양식
⑫ 증빙서류	-
• 장애인식개선 관련 사업 수행 실적, 대상별 교육 콘텐츠 개발 실적 현황	-
• 강의 실적증명서 또는 증명 가능한 강의 수행 실적 현황	-
• 전문강사 위촉장(또는 위촉평가 결과 안내 공문), 재직증명서	-
• 기타 교육 운영 계획서 작성 내용에 대한 참고 가능한 증빙서류 등	-

※ 단, 제출 서류는 심사 과정 중 필요에 따라 일부 추가 요청할 수 있음.

3 문의처

○ 인식개선교육기관 신청 관련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 02-3433-4514)

3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1 지정 절차

- (1단계: 적격 심사) 제출 서류 적격 여부* 검토

* 심사 제외 대상 안내

- 신청 자격이 아닌 기관이 지원한 경우(집합 대면 교육의 형태가 아닌, **온라인 원격 교육만** 운영하는 기관, **전문강사를 보유하지 않은 기관** 등)
-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접수하지 않거나, 접수기간 내 신청서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제출 서류를 누락한 경우(1개라도 누락하여 제출하거나, 신청서류 상 서명 등이 누락된 경우 등)
- 제출 서류의 사실관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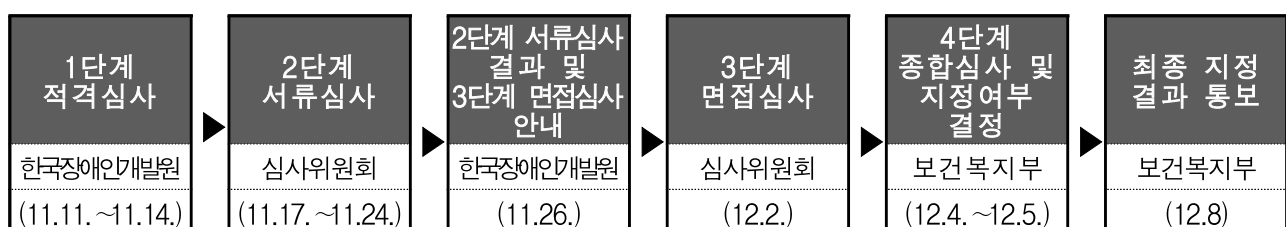
- (2단계: 서류 심사) 신청 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위원 서면 평가
- (3단계: 면접 심사*) 2단계 서류 심사 합격 기관에 한하여 기관장 발표 및 대표 강사 강의시연, 인터뷰 등을 실시하여 기관장 의지, 강사의 역량 평가

* 면접 심사 관련 안내

- 2단계 서류 심사 합격 기관 대상 면접 심사 실시(단, 상황에 따라 대면 심사는 변동 가능. 일정 및 장소 등은 추후 개별 통보)
 - ① 기관장 발표: 제출한 기관 소개 PPT에 대한 3분 발표 면접 파일(기관장 대리 발표 가능)
 - ② 대표 강사 강의시연: 2단계 서류 심사 합격 기관에 한하여 별도 제시한 주제로 교안(PPT)을 준비하여 15분 강의 시연

- (4단계: 종합 심사) 서류·면접 심사 점수를 합산한 결과와 종합적인 기타 의견 등을 판단하여 최종 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

2 단계별 세부 절차 및 일정(안)



※ 단, 상기 단계 및 일정 등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4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요건

1 주요 지정 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3 4항)

- 교육 운영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 인력, 교재 등의 전문성 및 적정성
-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기관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세부 기준표(안)

구분	평가항목	주요 평가요소	배점
기관의 역량 (30)	기관의 사업 운영 능력	• 기관의 장애인식개선 관련 사업 및 교육 콘텐츠 개발 수행 경험 • 강사와 의무교육 대상기관과의 교육 연계 노력 등	10
	조직구성의 전문성	• 기관 운영인력(조직)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양질의 강사 보유(경력 등의 전문성) 및 강사진 구성의 적절성 등	10
	기관장 의지	• 기관장의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가치관 및 비전 • 교육기관 운영 목적 및 취지와 부합성 등	10
교육 운영 적정성 (30)	계획 수립 충실성	• 전반적인 교육 운영 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 가능성 • 사전 조사의 적절성 • 교육 대상별 교육 콘텐츠 및 방법의 다양성 등	20
	교육 운영 강사의 역량	• (대표) 강사의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 시연의 우수성 등	10
교육 프로그램 및 훈련기반 적정성 (40)	교육 프로그램 적정성	• (대표) 교육 교재 및 교안의 적정성 등	20
	교육 훈련기반 적정성	• 교육기관 운영 및 환경의 적정성(기자재 보유 등) • 기관의 교육훈련 방법 및 훈련전파 노력도 등	20
장애 당사자 중심(5)	장애당사자 강사 보유	• 강사 중 50% 이상 장애당사자 강사 보유	5
총 점		100점 (가점 105점)	

※ 단, 평가요소 및 배점 등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해당 항목은 3단계 면접 심사 항목임.
- 면접심사 세부 일정 및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 기관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세부 기준표에 의거 종합 심사를 통한 최종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3 유의사항

- 신청 자격(P. 3)을 충분히 확인한 후, 인식개선교육 실시에 적합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경우에만 지원 바람.
- 제출 서류 목록(P. 4)을 필히 확인하시어 누락 없이 제출하며, 증빙 서류는 교육 운영계획서의 내용 확인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제출 바람.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명기된 심사 제외 대상(P. 5) 기준을 숙지하고 지원 바람.
- 제출 서류는 장애인복지법령, 상기 세부 기준표(P. 6)를 숙지하고 정한 기준(평가요소)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지정 이후라도 취소됨.

5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결과 발표

1 지정 결과 발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상 최종 인식개선교육기관 안내
 - 제출 기간 만료 후, 20일 이내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 인식개선교육기관명, 소재지, 대표자명 등 현황 공고

2 지정서 발급(재발급)

-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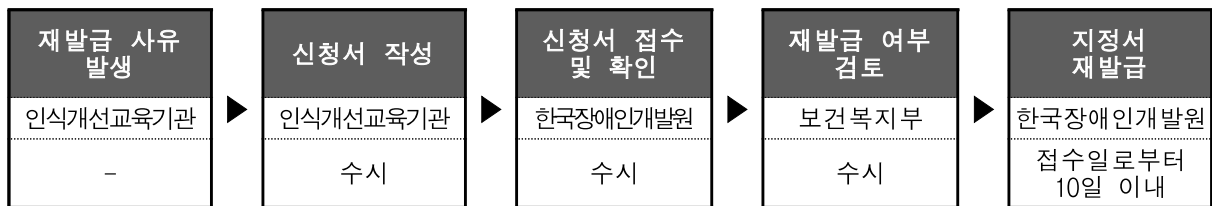
- (지정명의) 보건복지부장관
- (발급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 ⑤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

- (재발급 신청) 한국장애인개발원
- (재발급 사유)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 (제출 서류)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참고1), 재발급 사유 증명 서류 등



3 문의처

-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결과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17)

6 인식개선교육기관 역할

1 의무교육 대상기관* 모집

- 사전 교육 수요 파악 데이터를 중심으로 의무교육 대상기관 모집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홍보
- 지역 내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연간 교육 실시 계획(교육 일정, 교육 방법, 교육 내용, 강사, 모집 방법 등)을 사전 공지하여 의무교육 대상기관(대상자) 모집(정기 교육)

* 의무교육 대상기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② 장애인식개선교육 세부계획 수립

- 교육 대상자별 맞춤형 세부계획(강사명, 교육 방법 및 내용, 만족도 조사 등) 수립

③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안 또는 콘텐츠 개발

- 교육 대상별 표준 교안 및 교구재 등 양질의 콘텐츠 개발 지속 노력
- 콘텐츠 개발 등에 있어 접근성(수어, 자막 삽입 등) 확보 필요

④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및 관련 자료 보관

- 교육 세부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정기 및 수시)
-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3년간) 및 제출 의무

⑤ 인식개선교육기관별 소속 강사 역량강화

- 양질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위한 강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자체 운영(보수교육 등)
- 사전에 기관별 제출한 강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방법 및 훈련전과 내용을 토대로 강사 관리
- 지속적인 강의 활동 연계 등

⑥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 모니터링

- 장애인식개선교육 법정 지정요건 및 교육실시 사항 준수 여부 등 지속적으로 점검
- 기관별 자체 모니터링 계획 수립·평가 및 개선 노력

⑦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보고 등

- 연도별 교육 실적 보고(공통양식 제공 예정)
 - 교육 일자, 방법, 담당자 정보, 강사명, 교육비, 교육 주제, 참여 인원 등 실적 보고

7 인식개선교육기관 혜택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배점표 상 ‘교육방법 및 활용’ 항목 만점 부여

- ◎ (실적배점표 도입) 의무교육 대상기관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실적 점검 제도 도입

※ 실적배점표 점검 결과, 100점 만점 중 70점 미만인 의무교육 대상기관의 경우 부진기관으로 언론 등에 공표 예정

- 인식개선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을 받은 기관의 경우, 30점 배점 중 30점 만점 부여

8 인식개선교육기관 사후관리

1 모니터링

- 기관별 교육 내용 관련 모니터링 실시
 - 의무교육 대상기관 만족도 조사 및 전문강사 보유여부 등 확인
 - 사전에 제출한 기관별 교육 운영 계획서 등을 토대로 실제 운영 여부 등 계획의 실행 충실성 모니터링
- 정기적 현장 방문
 -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운영 및 현장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방문 실시

2 실적 평가

- 연간 운영 결과 보고에 따른 평가
 - 교육실적, 강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교육 콘텐츠 개발 등 기관이 제출한 사업실적 보고서를 토대로 연간 운영 결과 평가
- (우수 인식개선교육기관 선정) 평가를 통한 우수 기관 포상 등

3 지정 취소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위탁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전문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허위로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지정받은 경우 등)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함.
- 전문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청문절차)

* 전문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란?

- 지정일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전문강사를 보유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 붙임
1.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2. 교육 운영계획서
 3.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수행 실적(엑셀)
 4.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 및 소속강사 보유현황(엑셀)
 5. 서약서
 6. 개인(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 출 서 류

제출 서류 목록	비고
①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 공문	자유 양식
②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법정 양식)	붙임 1
③ 신청 자격 증명서류	해당 시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시설 정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법인 정관 등	장애인복지단체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법인 정관 등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단체 정관(또는 규약) 등	비영리민간단체
• 기타 신청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외 자격
④ 사업자등록증(업종/업태: 교육) 또는 고유번호증	공통제출
⑤ 교육 운영계획서(공통 양식)	붙임 2
⑥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수행 실적(엑셀 공통 양식)	붙임 3
⑦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 및 소속강사 보유현황(엑셀 공통 양식)	붙임 4
⑧ 서약서(공통 양식)	붙임 5
⑨ 개인(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 6
⑩ 대표교안(PPT, 슬라이드 노트 내 스크립트 대본 작성 필수)	자유 양식
⑪ 기관 소개 자료(PPT) - 해당 자료는 3단계 면접 심사에 활용하며, 향후 변경 불가	자유 양식
⑫ 증빙서류	-
• 장애인식개선 관련 사업 수행 실적, 대상별 교육 콘텐츠 개발 실적 현황	-
• 강의 실적증명서 또는 증명 가능한 강의 수행 실적 현황	-
• 전문강사 위촉장(또는 위촉평가 결과 안내 공문), 재직증명서	-
• 기타 교육 운영 계획서 작성 내용에 대한 참고 가능한 증빙서류 등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6. 4.>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0일
신청기관	명칭(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명)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식개선교육 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교육 운영 계획서 2. 전문강사 보유 현황 3. 교육에 사용할 교육 교재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확인

한국장애인개발원

→

검토·지정 결정

보건복지부

→

지정 결정 통지 및 지정서 발급

한국장애인개발원

210mm×297mm(백상지 80g/㎡)

2026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계획서

2025. . .

○○○ 법인 · 단체명

목 차

요 약	1
1. 비전 및 목표	0
2. 기관의 강사 관리 방안	0
3. 주요 사업 수행 실적	0
4. 인력 구성 현황	0
5.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수행 실적	0
6. 교육 운영 부문(계획)	0
7.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0
8. 강사 역량강화 계획	0
9. 주요 교육 평가 또는 모니터링 방법, 환류 방안	0
10. 교육 장비(기자재) 보유 현황	0

《 요 약 》

기관명				기관유형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단체 ☐ 사회복지법인 ☐ 기타()
대표자명				사업자등록 (고유)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설립일자	
대표메일				대표번호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홈페이지				FAX	
인력구성 (강사)				인력구성 (그 외 인력)	
장애인식 개선교육 강의 수행실적 (최근 3년, 전체강사)	구분	강의횟수	참여인원	주 교육대상 ※ 중복선택 가능	☐ 유아 ☐ 학생 ☐ 성인
	'22년 10~12월			주 교육방법 ※ 중복선택 가능	☐ 대면 ☐ 비대면 * 지정기관은 반드시 대면교육 실시해야함.
	'23년				☐ 강의 ☐ 체험 ☐ 기타()
	'24년				
	25년 1~9월			주 교육지역	
설립목적					
연혁					
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주요 사업내용					

1. 비전 및 목표

- 현 기관의 설립 목적 및 가치관, 비전
 - (설립 목적)
 - (가치관, 비전)
 - (주요 연혁)

년 월 일	내 용
00년 00월 00일	기관 설립

-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교육기관 지정의 필요성)
 -
-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
 -

2. 기관의 강사 관리 방안

- 기관의 강사 선발 기준
 - 기관에서 강사를 선발하는 기준
 -
- 기관의 강사 유지(보유) 방법
 - 기관에서 강사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유지하여 보유하는 방법
 -
- 그 동안 기관에서의 강사와 강의 매칭 연계 방법(교육 연계 노력도)
 - 기관에서 강사들에게 강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연계해주는 방법이나 노력도
 -

3. 주요 사업 수행 실적

- 그 동안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사업 수행 경험 및 성과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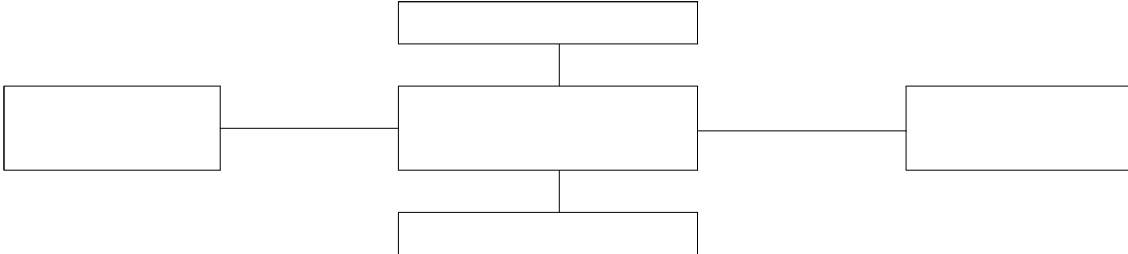
- 그 동안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별 콘텐츠 개발 수행 경험 및 성과

교육대상별	콘텐츠 내용 및 성과
유치원생	손가락 인형 개발 / 00% 만족도 평가, 00회 교육 실시
초등학생	
청소년	
대학생	온라인 콘텐츠 00000명 수강 / 00% 만족도 평가
성인	
기타 직군별 등	

4. 인력 구성 현황

기관 조직도

※ 기관 조직에 맞춰 도식 및 이미지 삽입



가. 인력 구성(총괄)

구분(부서)	성명	재직기간	상근여부	장애유무	장애유형
기관장		00년 00개월	☐ 상근 ☐ 비상근	☐ 유 ☐ 무	
총괄/사업 담당자					
전문/소속 강사					
행정					
홍보(영업)					
그 외 인력					
...					

나. 교육 운영 및 관리 전담인력(필수)

총괄 담당자			
성함		소속 / 직위	
상근여부	☐ 상근 ☐ 비상근	재직기간 ※25.9.30 기준	YYYY. MM. DD. ~ 2025. 09. 30. (년 개월)
계약형태	☐ 정규직 ☐ 비정규직	장애인식 개선교육 업무경력 ※25.9.30 기준	YYYY. MM. DD. ~ 2025. 09. 30. (년 개월)
전화번호 (내선직통)		핸드폰	
장애유무	☐ 유 ☐ 무	장애유형	

사업 담당자			
성함		소속 / 직위	
상근여부	☐ 상근 ☐ 비상근	재직기간 ※25.9.30 기준	YYYY. MM. DD. ~ 2025. 09. 30. (년 개월)
계약형태	☐ 정규직 ☐ 비정규직	장애인식 개선교육 업무경력 ※25.9.30 기준	YYYY. MM. DD. ~ 2025. 09. 30. (년 개월)
전화번호 (내선직통)		핸드폰	
장애유무	☐ 유 ☐ 무	장애유형	

다. 전문 및 소속강사 보유 현황

※ ‘[붙임4]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 및 소속강사 보유현황(엑셀)’에 작성하여 제출

구분	전문강사	소속강사	소계(명)	총계(명)	장애당사자 강사 비율 ¹⁾ (%)
장애					
비장애					

※ 장애당사자 강사 50% 이상 보유 시, 가점(5점)이 부여됨.

- 현재 기관에 소속되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강사(2025. 9. 30. 기준 전체인원)
- 전문강사 보유 증빙서류 제출(필수)
 - ①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위촉장 또는 위촉평가 결과안내 공문(한국장애인개발원 발급)
 - ② 재직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계약서 등 소속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1) 장애당사자 강사 비율(%) = 장애당사자 강사 인원 수 / 전체 강사 인원 수
(단,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

5.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수행 실적(최근 3년)

※ ‘[붙임3]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수행 실적(엑셀)’에 세부 강의실적 작성하여 제출
(단, 엑셀에 입력한 실적 수치와 일치하여야 함.)

구분	2022년 10~12월	2023년	2024년	2025년 1~9월	총계 (최근 3년)
강의횟수 ¹⁾ (건)					
교육인원 ²⁾ (명)					

- 최근 3년(2022. 10. 1. ~ 2025. 9. 30.)의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 수행 실적
- 교육기관으로 의뢰받아 ‘기관 명의’로 교육한 실적
(단, 강사 개인적으로 의뢰받아 개인 명의로 교육한 실적은 제외)
-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우수한 실적 최대 300건** 선별하여 기재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에 따라 별도의 자료요청 및 현장 방문 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내부결재 결과보고, 교육일지, 피교육기관 강의확인서 등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정보(일시, 대상, 참여인원, 교육내용, 강사명 등)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단, **직인날인 필수**, 담당자 도장 및 서명은 인정 불가)
- 1) 강의횟수: 교육 일정 및 대상자가 다를 경우, 각 1건으로 인정
(예) A학교에서 3개 학급 대상으로 각각 교육한 경우, 강의 횟수는 3건으로 인정
- 2) 교육인원: 교육을 이수한 실 참여자 수
(예) 여의도초등학교에 100명 교육을 의뢰받아 2명의 강사가 교육을 진행한 경우
 - (2명의 강사가 함께 100명 대상으로 1회 교육한 경우) 참여인원 100명, 강의횟수 1회
 - (2명의 강사가 각각 50명씩 분반하여 별도 교육한 경우) 참여인원 100명, 강의횟수 2회

6. 교육 운영 부문(교육 운영 계획)

가. 교육 대상기관 모집방법(그간 운영방식, 지정 이후 모집계획 등)

- 그 동안 모집방법
 -
-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이후 교육 대상기관(교육생) 모집계획
 -
- 인식개선교육기관 홍보방안
 -

나. 교육수요 파악 및 목표 설정

- 주 교육활동지역 내 교육수요 현황 (000기관, 00학교, 000유치원 00개소 등)

-
- 교육수요 파악을 통한 교육목표
 - 연간 교육인원, 교육횟수 ...
- 교육을 확장하기 위한 방안 등
 - 교육실적, 강의실적을 확대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도

다.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및 방법의 다양화

- 대상별 맞춤형 교육 실시를 위한 운영 계획

-

교육대상별	대상별 맞춤 교육 운영 계획
유치원생	대면 / 교구 등을 활용한 체험 교육, 인형극
초등학생	마술을 활용한 인식개선교육
청소년	
대 학생	
성인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인식개선교육
기타 직군별 등	

라. 비대면 교육 운영방법

- 비대면 교육 시, 교육 운영방법

-

마. 재정계획

-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이후, 운영에 따른 재원 마련 계획

-

- 강사 교육비 측정방법 및 집행 계획

-

7.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네트워크 구성 현황)

- 그 동안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

-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이후, 유관기관 활용 계획 등

연계기관명	기관 성격	연계 내용 및 활용 계획
0000	민간기관	교육장소 연계 활용
0000	공공기관	체험교육 활동 연계

8. 강사 역량강화 계획

- (기관-강사)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한 기관에서의 소속강사 역량강화 방안
 - 기관에서 강사에게 지원해 주는 역량강화
- (강사-강사) 강사 간 교육훈련 방법 및 훈련전파 계획
 - 전문강사가 소속강사에게 전파하는 교육훈련 방법 등

9. 주요 교육 평가 또는 모니터링 방법, 환류 방안

- 그 간 교육 실시 후, 교육 평가 또는 모니터링 방법
 -
- 향후 교육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한 피드백 · 환류 계획
 -

10. 교육 장비(기자재) 보유 현황

가. 교육 기자재(교재 등) 보유 현황

구분	품명	수량	용도
교재	PPT교안		성인용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안
교구	키트		
교육콘텐츠	VR체험		대학생 교육콘텐츠(VR체험 콘텐츠)
	...		
교육장비(기자재)	빔		
	노트북		
...	...		

나. 교육기관 시설 현황

구분	기관 현황
소재지	
소유 구분	☐ 기관 소유 ☐ 전세 ☐ 월세 ☐ 기타()
시설 규모(면적)	
교육기관 내에서 직접 교육 가능 여부	☐ 교육 가능 ☐ 교육 불가능
편의시설 설치 현황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등

<교육기관 시설 세부 현황>

순번	장소명칭	용도	교육 가능인원 (해당 장소에서 교육이 가능한 기관만 작성)	면적
1	강의실1	오프라인 수업 가능	20명	〇〇㎡
2	강의실2	온라인 수업 가능 (온라인 교육 강의 장비 셋팅)	20명	〇〇㎡
3	화장실			
4	장애인 화장실			
5	사무실			

교육기관 장소(편의시설 포함) 실물 사진

* 해당 소재지에서 직접 교육도 가능한지 등의 파악을 위한 용도임

교육기관 전체 모습	교육기관 입구
강의실1	강의실2
사무실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엘리베이터

※ 별첨 엑셀 파일에 작성하여 제출

- 최근 3년(2022. 10. 1. ~ 2025. 9. 30.)의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 수행 실적
- 교육기관으로 의뢰받아 '**기관 명의**'로 교육한 실적
(단, 강사 개인적으로 의뢰받아 개인 명의로 교육한 실적은 제외)
-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우수한 실적 최대 300건** 선별하여 기재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에 따라 별도의 자료요청 및 현장 방문 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내부결재 결과보고, 교육일지, 피교육기관 강의확인서 등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정보(일시, 대상, 참여인원, 교육내용, 강사명 등)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단, **직인날인 필수**, 담당자 도장 및 서명은 인정 불가)
- 1) 강의횟수: 교육 일정 및 대상자가 다를 경우, 각 1건으로 인정
(예) A학교에서 3개 학급 대상으로 각각 교육한 경우, 강의 횟수는 3건으로 인정
- 2) 교육인원: 교육을 이수한 실 참여자 수

(예) 여의도초등학교에 100명 교육을 의뢰받아 2명의 강사가 교육을 진행한 경우
 - (2명의 강사가 함께 100명 대상으로 1회 교육한 경우) 참여인원 100명, 강의횟수 1회
 - (2명의 강사가 각각 50명씩 분반하여 별도 교육한 경우) 참여인원 100명, 강의횟수 2회

※ 별첨 엑셀 파일에 작성하여 제출

- 현재 기관에 소속되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강사(2025. 9. 30. 기준 전체인원)
- 전문강사 보유 증빙서류 제출(필수)
 - ①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위촉장 또는 위촉평가 결과안내 공문(한국장애인개발원 발급)
 - ② 재직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계약서 등 소속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서 약 서

본 기관은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함에 있어 모든 서류를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보건복지부가 결정한 지정 결과를 존중 하겠으며 결과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 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일 지정 이후에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기관 지정의 취소 및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대표자명: (인)

한국장애인개발원장 귀하

개인(민감)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심사 및 관리와 관련하여 기관 소속 인력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수집 항목	기관 전체 소속인력의 성함, 소속 및 직위, 재직기간, 장애인식개선교육 업무 및 강의경력,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직통, 휴대폰), 이메일, 상근여부, 계약형태, 장애유무 및 유형
수집 및 이용 목적	소속인력 보유여부 확인, 지정 심사 및 단계별 결과 안내, 인식개선교육기관 운영 및 관리, 지정서 발급, 사업 결과보고
이용 및 보유기간	인식개선교육기관 선정 완료 후 3개월 까지 ※ 민원사무 처리를 위해 선정과정 완료 후 3개월간 보유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심사를 운영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수집 항목	장애 관련 사항(장애유무, 유형)
수집 및 이용 목적	선정 심사 내 장애인 가산점 부여
이용 및 보유기간	인식개선교육기관 선정 완료 후 3개월 까지 ※ 민원사무 처리를 위해 지원기관 선정과정 완료 후 3개월간 보유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심사를 운영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자필서명)

2025. . .

한국장애인개발원 귀하

참고 1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21. 6. 4.>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명칭(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명)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변경 사항	구분	(명칭, 소재지, 대표자명, 주소 등)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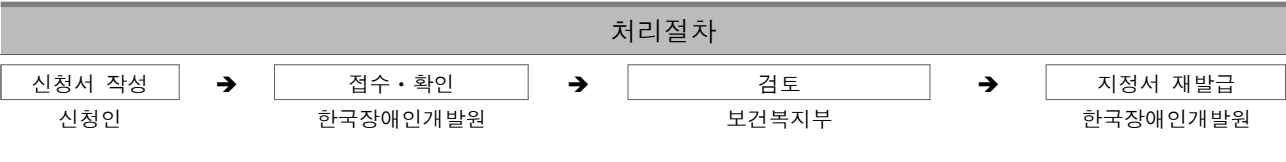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귀하

첨부서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30] [보건복지부령 제807호, 2021. 6. 30, 일부개정]

제2조의3(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를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기관(이하 “인식개선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2.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정관이나 규약 등에 인식개선교육의 실시를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인·비영리민간단체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의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이하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 운영 계획서
 2.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강사 보유 현황
 3. 교육에 사용할 교육 교재
 4.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인식개선교육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1. 교육 운영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2. 인력, 교재 등의 전문성 및 적정성
3.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기관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장에게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지정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2조의4(인식개선교육의 방법)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영 제16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식개선교육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2조의5(인식개선교육기관의 전문강사) 법 제25조의2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전문강사”란 법 제25조제7항 및 영 제16조의4제2호에 따라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개발한 전문강사 양성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전문강사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